

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산림파괴 예방 정책**

2025.3.



	승 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사회	등록번호	DTMS-SUS-002
	<b>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산림파괴 예방 정책</b>		승 인 일	2025.03.17
			페 이 지	<b>1 / 4</b>

### 제 1조 (목적)

1. 「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산림파괴 예방 정책」(이하 「정책」)은 산림 파괴를 예방하고,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우건설은 산림 보호 활동을 통해 생태계 보존과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 2조 (적용범위)

1. 본 「정책」은 산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사업을 포함하여 대우건설과 국내외 법인, 지사, 자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적용된다. 특히 산림 지역에 인접하거나 산림을 포함한 사업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대우건설은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자재 납품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산림파괴 예방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 3조 (거버넌스)

1.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정책」을 최종 승인하고, 산림파괴 예방을 위한 담당부서(이하 담당 부서)의 중요 계획과 활동을 점검한다. 필요시 중요사안에 대하여 이사회 보고를 결의한다.
2. 대표이사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경영진은 「정책」을 전사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3. 담당부서는 「정책」의 제·개정 및 관련 실무를 수행한다. 또한 단위 사업장에서의 산림파괴 예방 이행 성과를 취합하고, 중요사안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소통한다.
4. 사업 담당부서 혹은 현장은 단위 사업장의 산림파괴 리스크를 식별하고 상시 점검한다. 필요한 경우 산림 보호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또한 이에 대한 성과를 담당부서에 전달한다.

 <b>대우건설</b>	승 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사회	등록번호	DTMS-SUS-002
	<b>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산림파괴 예방 정책</b>		승 인 일	2025.03.17
			페 이 지	<b>2 / 4</b>

#### 제 4조 (원칙 및 방안)

1. 산림 보호 대책 수립: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혹은 시공 계획에 따라 산림파괴가 예상되는 경우, 산림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불가피한 산림 훼손이 발생할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 및 복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2. 친환경 기술 도입: 건설 현장에서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건설 기술과 자재를 사용을 검토한다.
3. 재조림 및 복원: 산림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피해 지역에 대한 재조림과 복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순산림파괴 제로(Net Zero Deforestation)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산림 보호 인식 제고: 단위 사업장이 산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대해 산림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산림 파괴 예방 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 제 5조 (점검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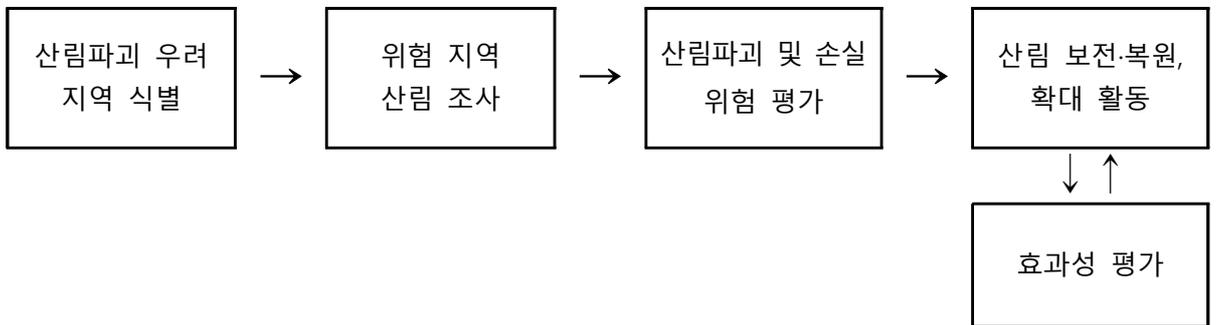
1. 상시 점검: 사업 담당부서 혹은 현장은 단위 사업장 및 인근 지역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해 산림파괴가 우려되는 경우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산림파괴 가능성을 상시 점검한다.
2. 산림 보호 실사 프로세스 운영
  - 1) 사업 담당부서 혹은 현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 보호 실사 프로세스 운영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시행한다.
    - ① 사업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 ② 법률 및 규제가 요구하는 경우
    - ③ 사업지 또는 인근 지역에서 이해관계자가 산림 피해나 우려를 제기하고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산림 보호 실사 프로세스는 산림파괴 우려 지역의 식별, 해당 지역의 산림 조사, 산림 파

 <b>대우건설</b>	승 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사회	등록번호	DTMS-SUS-002
	<b>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산림파괴 예방 정책</b>		승 인 일	2025.03.17
			페 이 지	<b>3 / 4</b>

괴 및 손실 위험평가를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 보호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산림 보전·복원 및 확대 활동을 진행한다.

- 3) 효과성 평가: 산림 보호 조치가 시행된 경우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보호 조치 필요여부를 검토한다.

**[산림보호 실사프로세스]**



3. 성과의 보고: 사업 담당부서 혹은 현장은 상시점검 및 생물다양성 보호 성과를 담당부서에게 전달하고, 담당부서는 중요 사안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 6조 (소통 및 공시)**

1. 대우건설은 「정책」 및 관련 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2. 대우건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산림보호와 관련된 정책, 주요 활동 및 성과를 공개한다.

**제 7조 (정책의 개정)**

1. 「정책」은 사업 환경, 법적 요구사항, 사회적 요구 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한다.

 <b>대우건설</b>	승 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사회	등록번호	DTMS-SUS-002
	<b>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산림파괴 예방 정책</b>		승 인 일	2025.03.17
			페 이 지	<b>4 / 4</b>

2. 「정책」 개정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 혹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